

대여금고약관

제1조(입고물품) 대여금고에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입고하실 수 있습니다.

1. 국채, 지방채, 공사채, 주권, 기타 유가증권
2. 예금증서 및 신탁증서
3. 계약서, 권리증서, 기타 중요문서
4. 화폐(기념화폐 포함), 귀금속 및 보석 등 귀중품
5. 기타 저희 상호저축은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

제2조(입고물품에 대한 확인)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필요에 따라 입고물품이 위함을질인자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3조(약정기한) 약정기한은 1년으로 하며 약정기한 후에도 계속 차용하실 경우에는 기한만료전에 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.

제4조(인감 및 비밀번호 신고) 대여금고 거래에 사용하는 인감 및 비밀번호(수동형 대여금고는 제외)는 저희 상호저축은행 소정용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제5조(열쇠의 보관) 대여금고 열쇠 2개중 예비열쇠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직원 입회하에 열쇠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저희 상호저축은행에 보관시켜야 하며, 상용열쇠는 거래처가 교부받아 대여금고 개비시에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
제6조(개비) ①수동형 대여금고를 열 때에는 대여금고 개비신청서를 제출한후 상용열쇠로 개비하여야 합니다.

②자동형대여금고를 열 때에는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상용열쇠로 개비하여야 합니다.

제7조(폐비확인) 대여금고 사용후에는 거래처가 반드시 폐비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, 폐비 불완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제8조(임의개비) ①금고 수리 등의 사유로 대여금고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 거래처의 동의를 받아야 열 수 있습니다. 다만, 화재·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비열쇠로 열 수 있으며,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거래처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. <개정 2016. 8.11>

②형사사건 등으로 인하여 법원의 제출명령 및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연락함이 없이 개비에 응할 수 있습니다.

제9조(입고품의 임의처분) ① 계약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입고물품을 찾아가지 않은 때에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입고물품을 임의반출하여 따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.<개정 2013.5.31.> <개정 2015.9.24.>

② 제1항에 따라 임의반출된 물품은 저희 상호저축은행 형편 등에 비추어 처분이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사전에 정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입고물품의 통상 시장거래 관행에 의거한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, 거래처와 사전에 정한 처분방법보다 유리한 가격이 기대되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.<개정 2013.5.31.> <개정 2015.9.24.>

③ 제2항의 단서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그 처분 전에 거래처에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해당 처분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,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이 도달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거래처에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안내된 방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<개정 2013.5.31.> <개정 2015.9.24.>

④ 저축은행은 본조에 따른 처분으로 처분금이 있는 경우 반출 또는 처분에 소요된 관련 비용과 대여금고 미납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거래처를 위해 공탁하기로 합니다. <개정 2013.5.31.> <개정 2015.9.24.>

제10조(대여금고 수수료) 대여금고 수수료는 대여금고 임차계약시 또는 기한갱신시 소정의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.

제11조(대여금고 임차보증금) ①대여금고 거래개시에 있어서는 저희 상호저축은행 소정의 대여금고 임차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②제1항의 임차보증금은 대여금고 거래가 종료된 후 이 거래에 관하여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의 변제에 총당한 다음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.

제12조(해지) ①대여금고 계약은 당사자 한편의 형편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저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해지통지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의 소정서식에 의하기로 합니다.

②제1항의 경우 상용열쇠는 반드시 저희 상호저축은행에 반환하여야 하며 만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.

③저희 상호저축은행이 해지통지를 신고된 주소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. 다만, 거래처가 제15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락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 <개정 2016. 8.11>

제13조(해지사유의 추가)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1. 본인이 사망한 때
2. 해산 또는 파산한 때
3. 거래처가 통상적인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법질서를 위반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<개정 2016. 8.11>
4. 계약기간 만료후 상당기간 경과시까지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때
5. 상호저축은행이 대여금고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금고의 이전·교체 등으로 부득이 거래해지가 필요한 때 <개정 2013.5.31, 2016. 8.11>

제14조(해지시의 수수료 계산) ①약정기한 전에 해지할 때에는 고객은 서비스 제공기간(경과일수)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(저축은행이 이미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) <개정 2013.5.31, 2016. 8.11>

②약정한 기한 경과 후에 해지할 때에도 그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. <신설 2016. 8.11>

③제13조에 의한 해지나 다른 대여금고로의 변경에 의한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월수로 계산하여 선취수수료 중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환급하여 드립니다.

제15조(신고사항의 변경) ①대여금고 열쇠나 신고인감을 분실, 도난, 손상한 경우 또는 인감, 비밀번호, 임차인의 명의, 직업, 대표자, 주소, 전화번호, 기타 이미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에 서면, 전화, 팩스,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5.31>

② <삭제 2013.5.31>

③대여금고 열쇠의 분실, 도난, 손상 등으로 자물쇠와 열쇠를 교체한 경우 그 비용에 관하여 저희 상호저축은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비용을 납입하여야 합니다.

제16조(양도, 전대 등의 금지) 대여금고의 임차권은 양도, 전대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제17조(연대보증인의 책임) 거래처의 약정사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저희 상호저축은행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보증인은 본인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제18조(면책) ① 신고된 인감(또는 비밀번호)과 상용열쇠를 지참한 자에게 저희 상호저축은행이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대여금고 개비에 응하여 드린 후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여도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②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에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대여금고번호, 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으로써 대여금고 이용과 관련하여 거래처에게 손해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③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또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의 고의·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<개정 2016. 8.11>